

[별지 제1호] <개정 2016. 12. 6.>

임원 선임 보고

문서번호

2024. 05. 21.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

제 목 임원 선임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의 임원 선임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1. 임원 선임 내용 1부
2. 임원 선임 심사표 각 1부. 끝.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 대표이사 박형석 (인)



작성 자 : 윤정원 (과장)

전화번호 : 02-787-0289

(붙임 1)

임원 선임 내용

1. 선임

직위 (상임 및 등기 여부)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 (만료일)	업무 범위	주요경력	검직 사항	자격요건 확인결과
상무 (상임, 미등기)	김범수 (金範洙)	770812	2024.05.16 [24.05.16(1)]	-	본부 총괄	- 2020.04 ~ 2021.08 신용협 동조합중앙회 글로벌금융 2팀 팀장 - 2021.08 ~ 2024.05 삼성중 권주식회사 IB 2부문 부 동산투자팀 팀장 - 2024.05 ~ 코람코자산운용 해외투자운용2본부장	-	결격사항 없음
전무 (상임, 미등기)	서덕식 (徐德植)	690405	2024.05.20 [24.05.20(1)]	-	본부 총괄	- 2013.04 ~ 2020.07 AIA생 명 자산운용실 상무 - 2020.11 ~ 2024.04 포커스 자산운용 운용본부 전무 - 2024.05 ~ 코람코자산운용 증권부문 기업투자본부장	-	결격사항 없음

2. 임원현황(변동 후)

직위 (상임 및 등기 여부)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만료일	주요경력	검직사항	비고
대표이사 부사장 (상임, 등기)	박형석 (朴炯錫)	671206	2023.3.31 [13.12.16(6)]	2025.3.31	코람코자산운용 (2013~현재) OrionPartners Korea(2007~2013)	-	-
(비상근)감사 (비상임, 등기)	김열홍 (金列弘)	670909	2023.3.31. [23.3.31(1)]	2026.3.31	코람코자산신탁 (2023~현재) (주)HMC네트웍스 부대표 (2022~2023) 하나은행 지점장 (1993~2022)	별첨-1 참조	-
사외이사 (비상임, 등기)	차정하 (車政河)	571008	2024.3.29 [21.3.31(3)]	2026.3.29	Reimagining Cities Foundation, Co-founder and Chair (2008~현재)	-	-
사외이사 (비상임, 등기)	송경순 (宋慶淳)	540114	2023.3.31. [23.3.31(1)]	2025.3.31	독립경제재무전문가 (KECG대표전문가)	-	-

					(2017~현재)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대표 (2007~2017)		
국내부문 대표 부사장 (상임, 등기)	김태원 (金泰沅)	691018	2023.5.31. [16.4.8(6)]	2025.3.31	코람코자산운용 (2016~현재)	-	'23.5.31 사내이사 선임
증권부문장 전무 (상임, 미등기)	이재길 (李在吉)	630309	2022.1.1 [18.7.16(3)]	2024.12.31	코람코자산운용 (2018~현재) 유진투자증권 (2007~18)	-	-
국내2부문 투자운용 2본부장 (상임, 미등기)	배도열 (裴度烈)	700510	2020.08.03 [20.08.03(5)]	2024.12.31	2020.08 ~ 現) 코람코자산운용 국내2부문 투자운용2본부장 1993.03 ~ 2020.07) 삼성생명 강남용자부 수석	-	-
기술지원실장 (상임, 미등기)	배경득 (裴勅得)	710129	2022.03.01. [22.03.01(3)]	2024.12.31	2022.03 ~ 現) 코람코자산운용 기술지원실장 2006.12 ~ 2022.02) 코람코자산 신탁 기술실 기술지원팀장	-	-
해외부문장 (상임, 미등기)	이인환 (李寅煥)	740820	2022.01.01. [16.01.01(9)]	2024.12.31	2014.01 ~ 現) 코람코자산운용 해외부문장	-	-
해외부문 해외투자운용 3본부장 (상임, 미등기)	문재연 (文哉然)	741016	2022.01.01. [21.08.02(4)]	2024.12.31	2021.08 ~ 現) 코람코자산운용 해외부문 해외투자운용3본부장 2020.03 ~ 2021.06) 마스틴투자 운용 해외부문 투자운용3본부장 2018.10 ~ 2020.02) 하나증권 구 조화실물투자실 이사	-	-
국내1부문 투자운용2본부장 (상임, 미등기)	박현석 (朴滋錫)	780328	2023.01.01. [21.03.01(4)]	2024.12.31	2013.05 ~ 現) 코람코자산운용 국내1부문 투자운용2본부장	-	-
증권부문 멀티에셋운용 본부장 (상임, 미등기)	이승훈 (李丞勳)	730821	2024.01.15. [24.01.15(1)]	2024.12.31.	2024.01 ~ 現) 코람코자산운용 증권부문 멀티에셋운용본부장 2017.07 ~ 2023.07) D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	-
국내1부문 투자운용1본부 투자운용1팀장 (상임, 미등기)	최명순 (崔明洵)	730522	2021.05.24. [21.05.24(1)]	-	2021.05 ~ 現) 코람코자산운용 국내1부문 투자운용1본부 투자 운용1팀장 2020.07 ~ 2021.04) 현대자산운 용 물류리테일본부장 2018.11 ~ 2020.06) 칼론인베스 트먼트자산운용 투자운용1본부 장	-	-

국내2부문 투자운용3본부장 (상임, 미등기)	조정환 (趙廷桓)	740115	2022.06.01. [22.06.01(1)]	-	2022.06 ~ 現) 코람코자산운용 국내2부문 투자운용1본부 투자 운용3팀장 2018.08 ~ 2022.05) 하나대체투 자자산운용 부동산부문 투자팀 장	-	-
컴플라이언스팀장 준법감시인 (상임, 미등기)	강현정 (姜顯貞)	760807	2023.06.25. [21.05.24(2)]	2025.06.24	2021.05 ~ 現) 코람코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팀장,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2016.11 ~ 2021.05 한국투자신탁 운용 리스크관리팀장	-	-
국내2부문 투자운용1본부장 (상임, 미등기)	이민우 (李敏佑)	770306	2021.03.01. [21.03.01(1)]	-	2021.05 ~ 現) 코람코자산운용 국내2부문 투자운용1본부 투자 운용1팀장	-	-
리츠운용본부장 (상임, 미등기)	정태웅 (鄭泰雄)	780925	2023.04.03. [23.04.03(1)]	-	2023.04 ~ 現) 코람코자산운용 리츠운용본부장 2021.03 ~ 2023.03) 삼성증권 IB 부문 부동산PF 1팀 상무 2019.01 ~ 2021.02) 이지스자산 운용 국내투자1파트3팀 이사	-	-
국내2부문 투자운용3본부 투자운용1팀장 (상임, 미등기)	김동훈 (金東勳)	790927	2023.11.13. [23.11.13(1)]	-	2023.11 ~ 現) 코람코자산운용 국내2부문 투자운용1본부 투자 운용3팀 이사 2019.05 ~ 2023.11) 케이클라비 스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 투자1 팀 이사 2008.06 ~ 2019.05) 한국토지신 탁 사업1영업1팀 차장	-	-
국내2부문 투자운용2본부 투자운용1팀장 (상임, 미등기)	유현선 (柳現善)	800824	2022.08.08. [22.08.08(1)]	-	2022.08 ~ 現) 코람코자산운용 국내2부문 투자운용2본부 투자 운용1팀장 2017.12 ~ 2022.07) 에이치티디 앤씨 사업본부 이사	-	-
Capital Market실장 (상임, 미등기)	백민정 (白旻諍)	811209	2023.03.13. [23.03.13(1)]	-	2023.03 ~ 現) 코람코자산운용 Capital market실장 2022.01 ~ 2023.03) 케펠자산운 용 투자운용2본부 이사 2020.03 ~ 2021.12) 알파자산운 용 부동산본부장 2018.08 ~ 2020.01) 엘비자산운 용 투자1본부 팀장	-	-
해외부문 투자운용1본부 투자운용1팀장 (상임, 미등기)	김규남 (金奎男)	790326	2024.03.01. [24.03.01(1)]	-	2016.09 ~ 現) 코람코자산운용 해 외투자운용1본부 투자운용1팀장	-	-
Research &	김열매	791225	2024.03.04.	-	2024.03 ~ 現) 코람코자산운용	-	-

Strategy 실장 (상임, 미등기)	(金열매)		[24.03.04(1)]		전략리서치실 실장 2021.11 ~ 2024.03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지원부 부부장 2019.09 ~ 2021.11 유진투자증권 대체투자분석팀 팀장		
기술지원실 이사 (상임, 미등기)	이석제 (李石濟)	770920	2024.05.09 [24.05.09(1)]	-	2012.06 ~ 2022.11 씨제이대한통 운 W&D본부 영업팀장 2022.12 ~ 2024.05 한국초저온 영업마케팅팀 이사 2024.05 ~ 코람코자산운용	-	-
해외부문 해외투자운용2본 부 부부장(상무) (상임, 미등기)	김범수 (金範洙)	770812	2024.05.16 [24.05.16(1)]	-	2020.04 ~ 2021.08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글로벌금융2팀 팀장 2021.08 ~ 2024.05 삼성증권주식 회사 IB 2부문 부동산투자팀 팀 장 2024.05 ~ 코람코자산운용	-	-
증권부문 기업투자본부장 (전무) (상임, 미등기)	서덕식 (徐惠植)	690405	2024.05.20 [24.05.20(1)]	-	2013.04 ~ 2020.07 AIA생명 자 산운용실 상무 2020.11 ~ 2024.04 포커스자산운 용 운용본부 전무 2024.05 ~ 코람코자산운용	-	-

[별첨-1]

회사명	구 분	업 종	겸직업무	직 위	겸직기간
코람코 자산신탁	모회사	부동산 신탁업	코람코자산신탁의 사내이사	전무 (경영지원실장)	2023.3.31 ~ 2026.3.31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김범수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공통사항>				
<p>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p>		해당사항 없음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해당사항 없음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해당사항 없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성 명	김범수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p>		해당사항 없음		
<p>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p> <p>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p> <p>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부터 3년</p>		해당사항 없음		
<p>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부터 5년</p> <p>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부터 4년</p> <p>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부터 3년</p>		해당사항 없음		
<p>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p>		해당사항 없음		
<p>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p>		해당사항 없음		

성명	김범수	직위	상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종합의견

위 사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 및 심사항목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임원 자격요건을 충족함.

2024년 5월 16일

코람코자산운용 상무 김범수 (인)

코람코자산운용 대표이사 박형석 (인)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서덕식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해당사항 없음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해당사항 없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서덕식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p>		해당사항 없음		
<p>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p> <p>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p> <p>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부터 3년</p>		해당사항 없음		
<p>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부터 5년</p> <p>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부터 4년</p> <p>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부터 3년</p>		해당사항 없음		
<p>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p>		해당사항 없음		
<p>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p>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서 덕 식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종합 의견

위 사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 및 심사항목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임원 자격요건을 충족함.

2024년 5월 20일

코람코자산운용 전무 서 덕 식 (인)
 코람코자산운용 대표이사 박 형 석 (인)

